

대구 동인동 센트럴 대원칸타빌 무순위(사후) 2차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3-427-0120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2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최초당첨자발표일(20년10월15일)로부터6개월 현재전매가능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2차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2차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0.09.21.(월)	2026.04.06.(월)	2026.04.10.(금)	2026.04.13.(월)	2026.04.15.(수)	2026.04.17.(금)

1 공통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적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2차 자모집공고일은 **2026.04.06.(월)**입니다.(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2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9.21.(월)**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0001111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2차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생한 불법행위재공급 시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사후) 2차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무순위(사후) 2차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4.10.(금)	2026.04.13.(월)	2026.04.15.(수)	2026.04.17.(금)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사업지 분양사무실 (청약접수 오전 09:00 ~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S발송 등 별도안내(13:00) ■ 추첨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224, 동인동1가 413 상가1, 105호) 	

- 본 무순위(사후) 2차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본 무순위(사후) 2차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사업주체에서 실시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대구광역시 중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0.10.15.)로부터 **6개월간 적용되어 현재 전매제한기간이 도과하였습니다.**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224, 동인동1가413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43층 3개동 총 410세대 중 무순위(잔여) 3세대
- 입주시기 : 즉시 입주가능(계약 후 공급금액 + 발코니 확장금액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전체 완납시)
- 공급대상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01	084.7824A	84A	2	102	3102, 3902
02	084.4267B	84B	1	102	3404
합 계			3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타입	동·호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2개월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 시	2026.06.17.(수)
84A	102동 3102호	31층	1	126,528,589	418,471,411	545,000,000	54,500,000	490,500,000
84A	102동 3902호	39층	1	126,528,589	418,471,411	545,000,000	54,500,000	490,500,000
84B	102동 3404호	34층	1	125,997,745	419,002,255	545,000,000	54,500,000	490,500,000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형 표기방식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으나,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공급금액에는 세대별 인지대,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기 공급금액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0.09.21.)와 동일한 공급금액으로 책정되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확장비, 옵션(시스템에어컨 등) 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발코니확장, 옵션 선택품목은 최초분양 계약자가 선택 계약한 사항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분양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당 사업주체(시행사,시공사)는 금융기관을 알선하지 않으니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2개월
		계 약 시	2026.06.17.(수)
84A	25,000,000	2,500,000	22,500,000
84B	25,000,000	2,500,000	22,500,000

■ 시스템에어컨(엘지) 공급대금

약식표기	동·호수	구 분	대 수	적 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2개월
						계 약 시	2026.06.17.(수)
84A	102동 3102호	일반형	5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6,500,000	650,000	5,850,000
84A	102동 3902호	일반형	5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6,500,000	650,000	5,850,000
84A	102동 3404호	일반형	5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6,500,000	650,000	5,850,000

※상기 유상옵션 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의 유의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0.09.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옵션품목(발코니확장, 시스템에어컨)은 설치되어있으며 분양계약 체결 이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체가 불가합니다.

※본 공급되는 세대는 발코니확장 기본 적용되어 있으며 세대내 가변벽체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계약자는 잔금납부와 동시에 자신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합니다.

※잔금납부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금 등)에 대하여는 잔금 납부 유무와 관계없이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공급대금(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APT 분양대금(계약금,잔금)	농협은행	301-0288-1930-11	(주)대원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기재
발코니 확장대금	농협은행	301-0288-1955-91	(주)대원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기재
시스템에어컨 공급대금	농협은행	301-0288-1955-91	(주)대원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기재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현장 수납 불가)

※잔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102동 3102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23102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상기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잔금납부일자를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지정된 납부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최초 공급계약 당시 선택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에 따라 자재의 주문·제작 및 설치가 완료된 관계로, 청약자는 위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공급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하다는 점을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관련 안내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2023.01.01.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044-204-3372~5)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매금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중 계약자부담(50%) 7만 5천원

· 수입인지 구매 후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분양대금 미납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 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순위(사후) 2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 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주택형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호수 또는 예비순번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2차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또는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2차 공급세대수의 9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주택형별 동·호수 또는 예비순번 추첨은 현장(분양사무실)에서 직접 추첨방식으로 진행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분양사무실 현장접수)**

- 경로 : 당 사업지 분양사무실 방문 → 청약신청서 작성(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청약신청서 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6:00
- * 16:00까지 청약 신청접수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6:0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분양사무실 현장접수)**

- 경로 : 접수처에서 취소가능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 **당첨자 발표 서비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6.04.13.(월) 10: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분양사무실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12월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여권정보확인서+본인 여권 포함제출) 등 · 재외국민/외국인 : ①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②국내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대리 계약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 사실 증명원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청약 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에 종사 증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주택 및 분양권 소유여부 증명서류	청약자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주택 : 관할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한 공문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가격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대리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제출시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청약자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 당첨자격확인 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불가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당첨자 계약 체결

구분	계약일정	계약장소	문의전화
당첨자 계약체결	2026.04.17.(금) 09:00~16:00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224, 동인동1가413 상가1 105호(분양사무실)	☎ 053) 427-012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구비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시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추가 개별통지 서류		○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인감도장	○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계약금(무통장 입금증)	○		-	·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		-	· 아파트내 상가 분양사무실 비치
	전자수입인지	○		-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아파트 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1/2씩 균등부담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o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 계약자가 부담하여 구매한 경우 공급체결 이후 사업주체가 계약자에게 지급예정
대리인 계약시 추가대출 서류 (본인 외 모두 제3자)	계약자(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 ※ 계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계약 불가
	위임장		○	-	· 아파트내 상가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제외동포는 국내거소신분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2026.04.20(월) 10:00까지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2026.04.20.(월)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7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p>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p> <p>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p>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p style="text-align: center;">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p>	<p>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p> <p>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p> <p>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p> <p>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p> <p>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p> <p>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p> <p>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p> <p>8. 무허가건물(중정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p> <p>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p> <p>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조항</th> <th style="width: 35%;">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 <th style="width: 15%;">주거전용면적</th> <th style="width: 15%;">수도권</th> <th style="width: 20%;">비수도권</th> </tr> </thead> <tbody> <tr> <td>제53조제9호가목</td> <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 <td>60㎡ 이하</td> <td>1억 6천만원</td> <td>1억원</td> </tr> <tr> <td rowspan="3">제53조제9호나목</td> <td>단독주택</td> <td rowspan="3">85㎡ 이하</td> <td rowspan="3">5억원</td> <td rowspan="3">3억원</td> </tr> <tr> <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 </tr> <tr> <td>도시형 생활주택</td> </tr> </tbody> </table> <p>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p> <p>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p> <p>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p> <p>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p> <p>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p> <p>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p> <p>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p> <p>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p>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참고사항

- 부대복리시설로는 관리사무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휘트니스센터 내 GX룸 1개소]
- 지하주차장은 지하4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장의 유효 천정고(보하단부터 바닥마감까지 높이)는 H=2.8m(지하1층 3.1m)임 (택배차량은 지하1층 주차장 진입이 가능함)다만, 시공과정에서 각종 배관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천정고는 일부구간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회 공급되는 단지의 현상 실사 후 계약 진행함을 확인하며, 현재 시설상태 그대로 인수되어 공동주택관리법령 기준에 의거 하자보수가 진행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시공업체
상호명	(주) 대 원	(주) 대 원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435번길 15(송정동)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435번길 15(송정동)
법인등록번호	150111 - 0003058	150111 - 0003058

■ 본 무순위(사후) 2차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brand.cantavil.com>)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견본주택 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224, 동인동1가413 상가1 105호(분양사무실)

■ 분양 문의 : 053-427-0120